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3년 3월 3일
- 회부일자 : 2003년 3월 4일

3. 제안이유

-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도 자체 종합감사 시 지적된 교육원장의 소관사무 중 도민교육관련 사무를 추가 명시하고
- 행정자치부의 사업소 명칭 변경 권고에 따라 「건설종합본부」의 명칭을 「종합건설사업소」로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공무원교육원장 소관사무 중 「도민교육훈련에 관한 사항」을 추가함.
- 건설종합본부 명칭 변경
 - “건설종합본부”를 ⇒ “종합건설사업소”로 함.
 - ※ 명칭 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 (3개 조례)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 중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소관사무를 정비하려는 것과

제207회 정례회에서 개정된 충청북도바이오산업추진단의 기구 설치 및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

「건설종합본부」를 「종합건설사업소」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,

○ 공무원교육원의 소관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,

○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,

충청북도 도민교육원은 농민교육원을

- 1982. 5. 충청북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변경 후

- 1997. 1.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과 통합됨에 따라 도민교육원 설치조례가 폐지되었는바

○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통합된 후 소관사무 조정 없이 농민교육을 실시한 사유와

2002년 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영농교육실시에 관한
사항을 재검토하여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되어있으나,
도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바

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
교육대상 및 범위,
교육원의 설치근거 및 명칭사용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
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